

② 파주시읍·면·동지가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□ 폐지이유

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게 됨에 따라,
- '90. 4. 11.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를 근거하여 제정·운영한 파주시읍·면·동지가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폐지코자하는 동 조례는 지가에 대한 기초 조사단계인 읍·면·동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을 기하고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,
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무총리훈령이 폐지('96. 6. 29)됨으로써,
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체되어 존치할 필요성과 설치근거를 상실함으로써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□ 검토의견

-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주요심의사항은
 1.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.
 2.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.
 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,

- '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가 190,631필지나되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610건이나 되고 있을 뿐 아니라,
- 최근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의 지구지정과 민간개발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지가 산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
- 동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가조사의 기초단계인 읍·면·동 단위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형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며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서 일괄 조사하여 산정함에 따른 조사·산정의 정확성 확보가 미흡할 것으로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시행전보다 급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.